

민원인 안내서

자체평가 자주묻는 질문집

2024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
CONTENTS

1. 인허가번호로 업체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. 1
2. 로그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 2
3. 모든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다. 3
4. 자체평가 메뉴만 있습니다. 4

질문 1

인허가번호로 업체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.

답변

인허가번호✓	<input type="text" value="인허가번호 입력(숫자)"/> <input type="button" value="업체조회"/> <p>* 허가증(신고필증, 축산업허가증, 영업허가증) * 공급업체인 경우 해당없음</p>
업체명✓	<input type="text"/>

업체명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인허가번호를 오기하여 발생합니다.

- 허가증의 인허가번호가 틀린 경우
 - ※ 지방자치제도라서 인허가번호가 허가증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


조사평가대상확인

인허가번호	<input type="text" value="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."/>	인증번호	<input type="text" value="예)2022-1-1234"/>	업체명	<input type="text" value="업체명 입력하세요."/>	전체	▼
-------	--	------	--	-----	---	----	---

인허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

- 조사평가 대상확인을 통해 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 - ※ <https://fresh.haccp.or.kr> > HACCP > 조사평가대상확인 > 인증서 우측상단의 인증번호(2020-1-0001/형식으로 작성)로 검색 >> 인허가번호확인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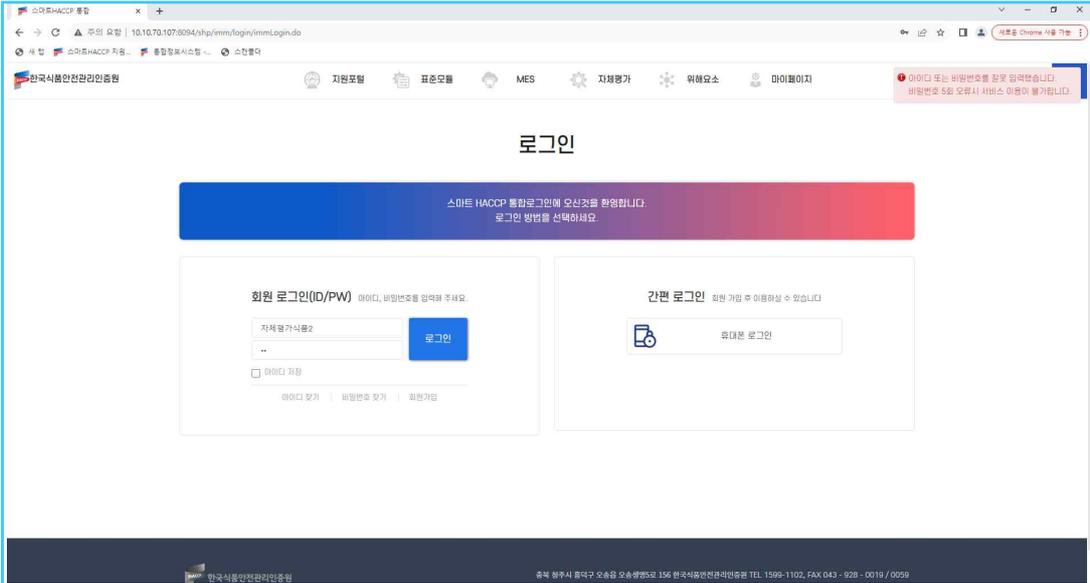
아이디의 업체현황에서 도입업체, 인허가번호를 수정하는 방법

- 프레시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의 업체현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 - ※ 도입업체 수정 : 식품(축산물)업체는 공급업체가 아니라 **도입업체**를 선택해야합니다.
 - ※ 인허가번호 수정 : <https://fresh.haccp.or.kr> > 마이페이지 > 업체정보관리

질문 2

로그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

답변



1. 사용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- 질문1을 확인하여 ID의 업체현황에서 **도입업체**로 수정 필요

2. 접근권한이 없습니다. 관리자 승인이 필요합니다.

- 질문1을 확인하여 ID의 업체현황에서 **도입업체와 인허가번호** 수정 필요



3. 해당 인허가번호에 대한 업체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
- 질문1을 확인하여 ID의 업체현황에서 **인허가번호** 수정 필요

질문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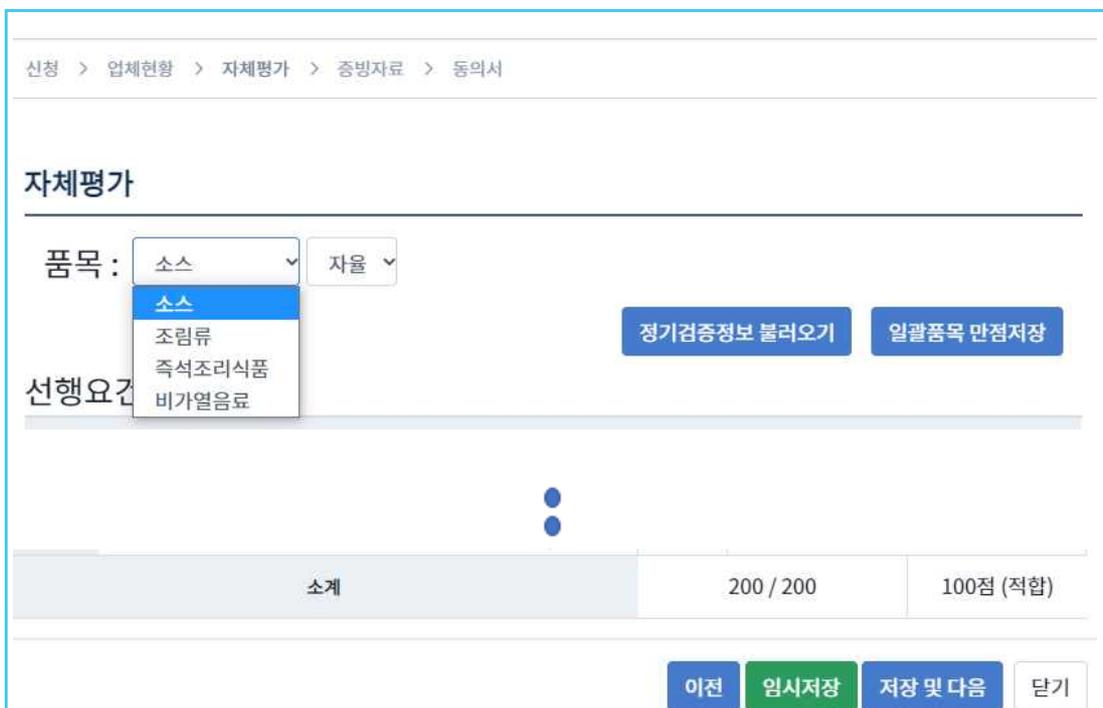
모든 유형이 나오지 않습니다.

답변

1. 자체평가 시스템은 ID의 인허가번호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.

○ 인허가번호 별로 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가공업 두 개의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개의 ID를 생성해야 합니다.



2. 위 사진의 품목을 클릭하여 다른 유형들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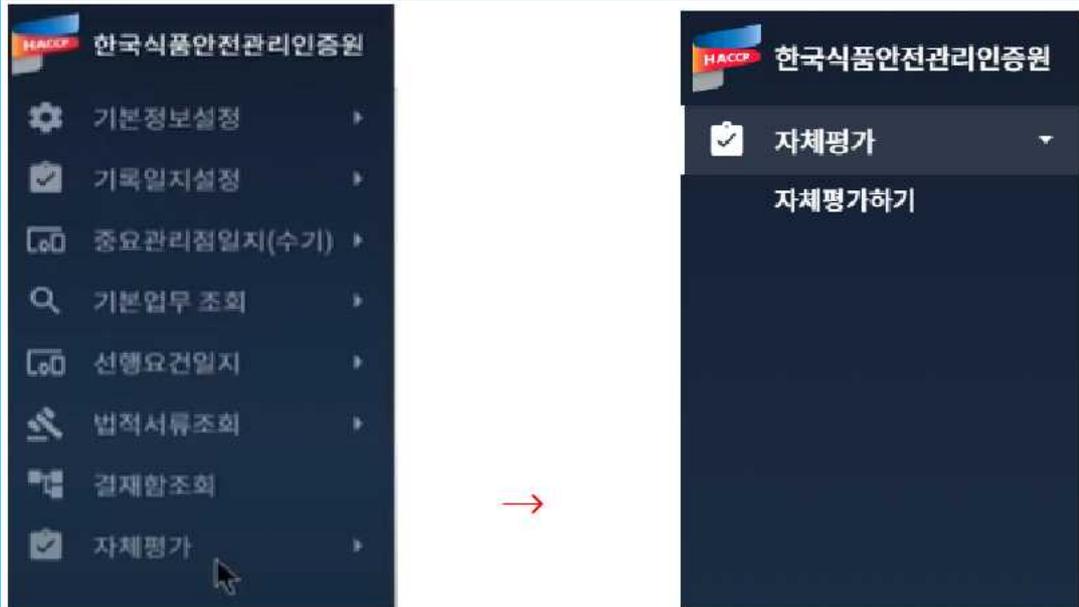
○ 상단의 (신청>업체현황>자체평가>증빙자료>동의서) 메뉴를 활용하여 증빙자료 메뉴로 갔다가 자체평가 메뉴로 올수 있습니다.

※ 품목선택 > 일괄품목만점저장 > 해당품목 평가실시 > 저장 및 다음 > 증빙자료 메뉴로 이동 > 상단의 자체평가 메뉴를 통해 복귀 > 품목선택 > 해당품목 평가실시 > 저장 및 다음 으로 반복작업

질문 4

자체평가 메뉴만 있습니다.

답변



1. 자체평가 메뉴만 있습니다.

○ 메뉴가 많이 나오는 업체는 스마트해첩을 적용한 업체입니다. 일반적인 업체는 자체평가 메뉴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.



2.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.

○ 좌측상단의 ≡ 도형을 선택하시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.

자체평가 자주묻는 질문집

초 판 발행 2024년 2월 16일

발행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
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
전화: 043-928-0115 <http://www.haccp.or.kr>

이 안내서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,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기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

이 안내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